

## 부천도시계획(용도지역)변경결정안심사보고

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6년 11월 28일(부천시장)

나. 회부일자 : 1996년 11월 28일

다. 상정 및 의결 일자 : 제49회부천시의회(정기회)도시건설위원회제2차회의  
(1996년 11월 29일 상정 의결)

### 2. 제안설명요지

(제안설명자 : 건설교통국장 이충식)

#### 가. 제안이유

- 제30회 부천시의회(임시회 제1차 본회의 94. 8. 1)시 용도지역 변경결정(안)에 대하여 원안 가결 받은 바 있으나, 도시 계획 입안면적이 의견청취 내용보다 감소(변경)되어
-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.

#### 나. 주요골자

- 관내 오정구 삼정동 12-7번지 일대에 축산물유통의 원활을 기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수산물공판장을 신설할 수 있도록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

#### 다. 관련근거

-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,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

### 3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### 4. 토론요지 : 없음

### 5. 심사결과 : 찬성의견서 채택

### 6. 소수 의견의 요지 : 없음

### 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### 8. 첨부서류 : 의견서 1부

## 의 건 서

|       |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의안번호  | 184     | 안전명 | 부천도시계획(용도지역)변경결정안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 출 자 | 부 천 시 장 |     | 의 결               | 제49회 부천시의회(정기회)            |
|       |         |     | 년 월 일             |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(96. 11. 29) |

## 부천도시계획(용도지역)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

삼정동 12-7번지일대 시설 계획된 부천축산물 공판장은 부천시와 부천시민생활에 필요한 시설로서 계획된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용도지역 변경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1996. 11. 29

부천시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

## 부천도시계획(용도지역)변경결정안

의안번호

184

제출년월일 : 1996. 11. 28

제 안 자 : 부 천 시 장

### □ 제안사유

- 제30회 부천시의회(임시회 제1차 본회의, 94. 8. 1)시 용도지역 변경결정(안)에 대하여 원안 가결 받은 바 있으나, 도시계획 입안 면적이 의견청취 내용보다 감소(변경)되어
-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.

### □ 주요내용

- 관내 오정구 삼정동 12-7번지 일대에 축산물유통의 원활을 기하고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수산물공판장을 신설할 수 있도록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

### □ 관련근거

-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,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

### □ 참고사항

- 주민의견 청취결과
  - 공람기간
    - 제1회 수도권일보 : 96. 10. 5부터 14일간
    - 제2회 인천일보 : 96. 10. 5부터 14일간
  - 주민의견 : 의견제출자 없음

## 부천도시계획(용도지역)변경결정안

## □ 용도지역 변경결정 사유 및 조서

## ○ 용도지역 변경결정 사유

| 구 분 | 위 치               | 용 도 지 역 |      | 면 적<br>(㎡)          | 변 경 사 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|                   | 기 정     | 변 경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당 초 | 삼정동 12-15번지<br>일대 | 생산녹지    | 자연녹지 | 37,400              | 농수산물공판장 신<br>설에 따라 생산녹지<br>에서 자연녹지지역<br>으로 용도변경 |
| 변 경 | 삼정동 12-7번지<br>일대  | 생산녹지    | 자연녹지 | 31,083<br>(감 6,317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○ 용도지역 변경결정 조서

| 구 분        |      | 면 적(㎡)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비 고          |
|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           |      | 기 정          | 변 경      | 변 경 후        |              |
| 합 계        |      | 52,180,000.0 | —        | 52,180,000.0 | 도시계획<br>구역면적 |
| 녹 지<br>지 역 | 소 계  | 27,237,476.5 | —        | 27,237,476.5 |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생산녹지 | 4,200,911.5  | 감)31,083 | 4,169,828.5  |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자연녹지 | 23,036,565.0 | 증)31,083 | 23,067,648.0 |              |